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7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의 자격을 확대 규정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원활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제명을 허가받은 명칭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” 으로 동일하게 변경
- 의료법인외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, 병원장의 자격요건을 확대 규정(안 제4조제1항의3)
 - 요양병원입원환자의 실태에 적합한 전문의로서의 진료와 병원장 겸임 가능
 -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에 기여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"를 "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"을 "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의3 중 단서 "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)"를 "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신과,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)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u>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·제35조 및 「의료법」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<u>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</u>(이하 “병원” 이라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병원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<u>각 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 1. 생략 2. 생략 3. 의료법인의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) 제10조(위·수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·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	<u>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</u> 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<u>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</u>----- ----- -----. 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 1. 현행과 같음 2. 현행과 같음 3. ----- ----- ----- 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신과,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 의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) 제10조(위·수탁의 취소)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	○ 허가된 명칭사용 ○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입원환자 실태에 적합한 전문 의료 병원장 겸임 ○ 용어 정비